

2025년도 용역이행 실적신고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개선

□ 추진배경

- 지난 '24년 정기총회에서 소규모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적신고 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어, 부과 방식을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

□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및 증명서 발급비용 소액 유료화 안내

- 수수료 부과방식 : 당해년도 실적 신고 금액 기준 차등 부과
 - 협회는 지난 제10차 이사회(2024.12.16) 결과에 따라 용역이행 능력 평가·공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
 - 당해년도 실적(매출액)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
- 제증명 및 수행거리측정서 발급 수수료 유료화 : 건당 1,000원
 - 회원사 대상으로 현재 무료인 증명서 발급비용 소액 유료화

□ 실적신고 수수료 부과기준

- 기존 : 기본 요금 + (건당수수료 * 실적신고수)
- 변경 후 : 기본 요금 + 실적신고액별 수수료

(단위: 원, VAT별도)

구분	기존		변경 후		
	기본요금	건당 수수료	기본요금	실적신고액별 수수료	
회원사	300,000	2,500	300,000	100억원 이상	600,000
				50억원 ~ 100억원	500,000
				30억원 ~ 50억원	400,000
				30억미만	300,000
비회원사	400,000	5,000	현행 유지		

□ 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과기준

- 기존 : 회원사 무료
- 변경 후 : 1,000원
- 시행시기 : 2025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

구분	기존	변경 후
	발급 수수료	발급 수수료
회원사	무료	1,000
비회원사	제증명: 30,000 수행거리: 55,000	현행 유지

※ 증명서: 용역이행실적증명서, 신인도확인서, 평가액확인서, 평가등급증명서, 수행거리측정서

□ 수수료 확인 및 납입처 안내

- 수수료 확인 : 협회 통합전산시스템(<http://siljuk.koras.org>) 로그인
→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 상 실적신고 자료입력
→ 9. 실적서류 제출 및 출력(1차) → 수수료 확인
- 납입처

구분	납입 계좌
제증명서	우리은행 1005-881-007787 (예금주: 한국건설자원협회)
수행거리 및 실적신고	우리은행 1005-982-007787 (예금주: 한국건설자원협회)

※ 실적신고액별 수수료 확인 후 비용은 완납해야하며,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하여야 함

- 문의 : 정보관리센터(☎02-3476-7787, 내선번호 4)